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 등〉

■ 박은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5578호)

2025. 4.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이 화 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	3
2.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15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박은정의원 등 10명
2. 제 안 일 : 2024. 11. 14.
3. 회 부 일 : 2024. 11.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헌법재판소는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음(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그런데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어, 헌법재판관이 되려는 자의 공무담임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음.

헌법연구관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 또는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를 자격요건으로 정하고 있음. 검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 판사의 정년은 65세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과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연장하여 형평성을 도모하고 헌법재판소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및 제19조제7항).

Ⅲ. 검토의견

1.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 정비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당법」 제22조¹⁾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내용임(안 제5조제2항제4호 삭제).

현행	개정안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 3. (생략)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6. (생략) ③ (생략)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3. (현행과 같음) <u><삭제></u> 5. 6.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 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

나. 현행법상 헌법재판관 및 법관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

헌법재판관은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고(헌법 제111조제2항)²⁾, 정무직으로 하되,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르는바(「헌법재판소법」 제15조제1항)³⁾,

헌법재판관은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의 자격 요건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헌법재판소법」 제5조제1항)⁴⁾,

i)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iii)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

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2) 「대한민국헌법」 제111조 ②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3) 「헌법재판소법」 제15조(헌법재판소장 등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따르며, 재판관은 정무직(政務職)으로 하고 그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따른다.

4)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1. 판사, 검사, 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나지 아니한 사람, iv)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헌법재판관이 될 수 없음(「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5).

한편, 현행법상 법관은 ①판사·검사·변호사, ②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③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의 자격 요건을 가질 것이 요구되고(「법원조직법」 제42조)6),

5) 「헌법재판소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③ 제2항제6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한다.

6) 「법원조직법」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i)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ii)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iii)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iv)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⁷⁾, v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vii)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법관이 될 수 없음(「법원조직법」 제43조)⁸⁾.

-
-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 ③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 ④ 판사의 임용에는 성별, 연령, 법조경력, 종류 및 기간, 전문분야 등 국민의 다양한 기대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 ⑤ 법원행정처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판사 임용 과정과 결과 및 임용제도 개선 상황을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7) 다만, 헌법재판소는 2024년 7월 18일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음.

- 8) 「법원조직법」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제7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헌법재판관 및 법관의 결격사유 ＞

헌법재판관 결격사유(헌법재판소법)	법관 결격사유(법원조직법)
제5조(재판관의 자격)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제4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관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으로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6.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7.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단순위헌, 2021헌마460, 2024.7.18. 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 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다. 검토의견

최근 헌법재판소는 과거 3년 이내의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한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 독립에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과도하게 공직 취임의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결정한바 있음(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은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므로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당파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임용시점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 내에 당원 경력을 가진 사람을 임용에서 배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들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것은 당원 경력이 재판의 독립과 법관의 정치적 중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상당한 억지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으면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추론 내지 추단에 근거한다. 그러나 탈당 등으로 법관 임용 시점에 당원 신분을 상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 3년 이

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면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고 재판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라는 논리필요적 근거는 발견되지 아니한다. (중간 생략) 공무원 신분 취득 전에는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하였기에 향후 법관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없다는 특별한 사정도 없이, 단지 당원 신분에 관한 과거 경력만으로 향후 당파적 편향성을 가지고 재판에 임할 것이라는 예단에 근거하므로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그로 인하여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던 기간 동안 정당가입의 자유마저 폭넓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규범조화적이거나 필요최소한의 제한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정치적 이해관계로 재판의 독립이 훼손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법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법취지에 공감하지만, 이 점만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과거 3년 이내의 단순 당원 경력까지 법관 임용 결격사유에 포함시키게 되면 공무담임권이 광범위하게 제한되는 것은 물론, 장래 법관 임용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하게 됨으로써 국민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정당가입의 자유마저 지나치게 위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사익 침해는 결코 가법지 않다. (중간 생략)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임용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장래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 필연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심판대상조항이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이란 공익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지 불분명하다. 결국 심판대상조항은 불확실한 공익 기여를 위하여 법관에 임용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법익의 균형성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 헌법재판관과 법관은 그 자격요건과 결격사유가 유사한 상황인바, 개정안은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된 법관의 결격사유(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소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헌법재판관 결격사유 또한 위헌성이 있는 측면을 고려하여 관련 부분을 삭제하려는 것으로,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정당의 자유⁹⁾ 및 공무담임권¹⁰⁾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¹¹⁾ 및 재판의 독립¹²⁾이 조화롭게 보장될 수 있도록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우선,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21헌마460)이 있었던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 이외에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부분도 함께 삭제하고 있는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정당법」 등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부분은 헌법재판관의 결격사유로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에 대하여 위헌 결정(2021헌마460)을 한 것으로, 단지 임용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당원 경력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사람이 장래 법관으로 임용될 경우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훼손할 것이라는 논리필연적 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법관에 임용되려는 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

9) 「대한민국헌법」 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제8조제1항에서는 정당설립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여기에는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가입의 자유, 정당활동의 자유, 정당해산의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음(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38면 참조).

10) 「대한민국헌법」 제25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임권을 가진다.

11) 「대한민국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2) 「대한민국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한 해당 규정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하였지만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는 여전히 필요한 것으로 보았음.

헌법 제7조제2항¹³⁾에서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당법」 제22조제1항제1호¹⁴⁾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¹⁵⁾은 원칙적으로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가공무원

13) 헌법 제7조 ②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14)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비서관·비서·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15)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국가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법관, 검사, 외무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국가정보원의 직원, 경호공무원과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를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한다)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3. 삭제 <2012. 12. 11.>

4. 삭제 <2011. 5. 23.>

④ 제3항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법」 제65조제1항¹⁶⁾에서는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자로 임명되는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에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 부분은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음, 헌법재판관의 결격 사유를 정비함에 있어 개정안과 같이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부분을 삭제할 것인지, 실제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여 결격 사유를 새로이 설정할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즉, 헌법재판소는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에 대한 위헌 결정(2021헌마460)의 이유에서 과거 당원의 신분을 취득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정치활동의 내용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가려 이를 다르게 규율함으로써 입법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점¹⁷⁾ 등을

16)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제84조(정치 운동죄) ① 제6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과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17)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결정(“과거 당원의 신분을 취득한 경력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 정치활동의 내용과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① 당원으로 소속된 정당에서 당대표·최고위원·사무총장·대변인·지역위원장·당협위원장 등 보직을 부여받거나 공직선거에서 소속 정당의 후보자로 등록됨으로써 본인의 의지에 따라 적극적으로 정치적 활동을 하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반면 ② 배우자 등 가족이나 지인이 선거에 출마하는 과정에서 당내경선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탁에 의하여 입당원서만을 제출하거나 소액의 당비만 납부하면서 소극적으로 당원 지위를 유지하였던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또한 현행법상 당원 가입은 16세부터 가능한데 18세 미만인 미성년자인 경우 그 법정대리인이 지인의 당내경선에 도움을 주고자 미성년자 본인도 모르게 당원으로 가입시키고 이후 본인이 모르는 상태에

고려할 때 헌법재판관 임용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현행법과 같이 일률적으로 당원이었던 사람을 일정기간 동안 결격사유로 두는 것은 삭제하더라도 실제 정치적 활동에 대한 경중을 구분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격 사유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라.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결격사유의 삭제 여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과 헌법재판관의 정치적 중립 제고의 필요성 간의 비교형량, 법관 임용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던 「법원조직법」 제43조제1항제5호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한 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의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나,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국가권력의 남용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

서 장기간 방치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위 ①의 경우와 위 ②의 경우는 정치적 활동의 내용 및 정도에 있어 분명 차이가 있으므로, 가사 정치적 중립성과 재판의 독립을 위하여 과거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해야 할 불가피한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경중을 가려 이를 다르게 규율함으로써 입법목적에 달성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법원조직법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과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다(제43조 제1항 제6호, 제7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과거 3년 이내의 모든 당원 경력’을 법관 임용 결격사유로 정함으로써 그 입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임용 후 정치적 중립성 및 재판의 독립과 긴밀한 연관성이 없는 경우까지 공직취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

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높은 신뢰가 요구되는 점, 만일 과거 당원 경력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용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 실제 정치활동에 대한 경중을 가려 합리적인 범위로 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관 임용 결격사유 중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헌법재판소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의 취지와 대법관과 동일한 수준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요구되는 헌법재판관의 위상을 고려하였을 때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나, “「정당법」 제 22조에 따른 정당의 당원”부분까지 삭제한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2.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가. 개정안의 내용

개정안은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임(안 제19조제7항).

현행	개정안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생략)	제19조(헌법연구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u>60세</u> 로 한다.	⑦ ----- ----- <u>65세</u> -----.
⑧ ~ ⑪ (생략)	⑧ ~ ⑪ (현행과 같음)

나. 우리나라 공무원의 정년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하고 있는데(「국가공무원법」 제7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6조¹⁸⁾), 예외적으로 정년이 60세 초과로 정해져 있는 공무원은 다음과 같음.

18)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지방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 60세 초과 정년 공무원 >

정년	공무원	근거법률
70세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법」 제7조제2항
65세	판사	「법원조직법」 제45조제4항
	검찰총장	「검찰청법」 제41조
	고등교육기관의 교원인 교육공무원	「교육공무원법」 제47조제1항 단서
	특별감찰관	「특별감찰관법」 제12조제2항
63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	「검찰청법」 제41조
62세	교육공무원(고등교육기관 교원제외)	「교육공무원법」 제47조 제1항 본문

다. 점토의견

헌법연구관¹⁹⁾은 헌법 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헌법재판소 소속의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서,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

- 19) 「헌법재판소법」 제19조(헌법연구관) ① 헌법재판소에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수의 헌법연구관을 둔다.
 ② 헌법연구관은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한다.
 ③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審理)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한다.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 ⑤ 삭제 <2003. 3. 12.>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1. 4. 5.>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3.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⑦ 헌법연구관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정년은 60세로 한다.

의 직에 있던 사람,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헌법연구관이 검사나 판사의 자격요건과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정년은 63세²⁰⁾, 판사²¹⁾의 정년은 65세²²⁾임에 반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일반 공무원²³⁾과 마찬가지로 60세이므로 형평을 고려하여 판사의 정년과 마찬가지로 65세로 연장하려는 것으로²⁴⁾,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을 통해 헌법연구관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헌법연구관의 경험과 전문성을 더 오래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법률 해석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높이 고자 함에 개정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참고로, 2025. 3. 1. 현재 헌법재판소에 임용되어 있는 헌법연구관은 총 69명(별도 정원 5명 포함)임.

20) 「검찰청법」 제41조(정년)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검찰총장 외의 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21) 「법원조직법」 제5조(판사)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판사로 한다.

22) 「법원조직법」 제45조(임기·연임·정년)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重任)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판사의 임기는 10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④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각각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

23) 「국가공무원법」 제74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24) 제안이유 참고

다만,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연장하는 개정안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첫째, 헌법연구관의 임용 자격 등을 바탕으로 유사 직역에 있는 판사, 검사 및 다른 공무원 등의 정년을 고려하고, 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헌법연구관은 판사와 임용요건에 있어 비슷한 측면이 있으나,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외에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있었던 사람,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나 연구기관에서 종사한 사람도 헌법연구관으로 임용될 수 있어 임용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고, 특히 판사 임용의 경우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헌법연구관과 차이가 있음.

따라서 헌법연구관과 판사의 임용요건에 다소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판사의 정년(65세)과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는지, 검사의 정년(63세), 공무원의 정년(60세)에 비추어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5세로 상향하는 경우 유사 직역에 있는 대상자와의 형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판사, 헌법연구관 및 검사 임용자격 >

판사 임용자격	헌법연구관 임용자격	검사 임명자격
제42조(임용자격) ①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20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직(職)에 있던 45세 이상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② 판사는 5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이 경우 20년 이상 제1항 각 호의 직에 있던 사람 중에서 특정 재판 사무만을 담당하는 판사를 임용할 수 있다.	제19조(헌법연구관) ④ 헌법연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헌법재판소장이 재판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용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3. 국회, 정부 또는 법원 등 국가기관에서 4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4.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회, 정부,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 등 국가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5.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헌법재판소규칙으로 정하는 대학 등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제29조(검사의 임명자격)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사람 2.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둘째, 헌법연구관 조사·연구의 업무 성격, 헌법재판 사건 현황 및 헌법연구관의 이직 추이 등을 고려하여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의 진행할 필요할 것으로 보임.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데, 헌법재판소에 접수되는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헌법적 쟁점을 검토한 뒤 기존 결정례와 외국입법례 등을 종합해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심 재판관과 의견 조율을 통해 보고서를 보충하고, 재판관 전원이 참석하는 평의를 통해 재판관들의 합의가 끝나면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함²⁵⁾.

즉, 헌법 및 법률에 대한 법적 분석과 연구를 통해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 주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바, 최근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사건 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 2,800여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되어 처리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건수도 증가하고 있어 업무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 최근 10년간 헌법재판소 사건 접수건수, 처리건수, 미제건수 현황 >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접수건수	1,969	1,859	1,951	2,626	2,427	2,730	3,241	2,827	2,829	2,591
처리건수	1,888	1,937	1,976	2,425	2,447	2,519	3,042	2,621	2,675	2,659
미제건수	824	746	721	922	902	1,113	1,312	1,518	1,672	1,604

자료: 헌법재판소

실제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년~2024년)간 16명의 헌법연구관이 이직을 하였고, 그 중 12명(75%)이 대학교수(6명) 및 판사(6명)로 이직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바, 헌법재판소는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한 인재 영입을 위해서는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

25) 법률신문, “헌재 헌법연구관 25시”, 2017년 4월 24일자 기사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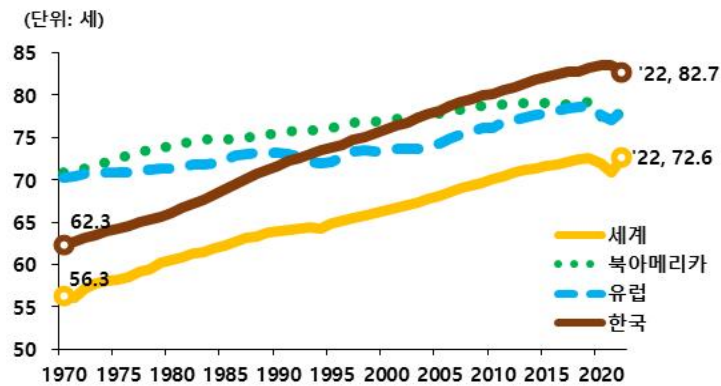
는 의견을 제시함.

다만, 헌법연구관의 직무 성격은 재판을 통해 법적 판단과 판결의 최종 책임을 지는 판사와는 다소 다른 측면이 있고, 헌법재판 사건의 접수·처리건수 및 미제건수 증가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외에 신규 인력 유입을 통한 헌법연구관 수의 확충 방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관련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최근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인한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공무원·교원의 정년 연장을 포함하여 민간 기업들의 정년 제도 변화에 대한 의견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바, 정년 연장은 사회적 합의 도출이 필요한 측면이 있으므로 관련 논의 진행 상황 등을 함께 고려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노인빈곤률 또한 2023년 기준 40.4%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상황임. 더불어 의료기술의 발달로 기대수명은 2022년 기준 82.7세로 꾸준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고령층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대안으로 법적 정년 연장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세계와 한국의 기대수명 추이 >



출처: 통계청 보도자료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 (2024. 9. 23.)

이러한 의견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률안²⁶⁾이 국회에 발의되어 계류 중에 있으며, 사회적 대화기구 등에서도 근로자 외에 공무원, 교사 등의 정년 연장 관련 논의를 함께 진행하고 있는 상황임²⁷⁾.

정년 연장은 정년제도의 목적,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구조적 변화, 노동시장 구조, 청년 일자리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는 사항인바, 현재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 및 연령 정년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관련 논의 진행 상황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6)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홍배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2981호), (박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342호), (서영교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462호), (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853호), (김주영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776호), (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5705호)

27) 뉴스1, “노사정 ‘공무원 타임오프’ 첫 결실…‘정년연장’ 해법도 나올까”, 2024년 10월 23일자 기사. 뉴시스, “공무직 이어 공무원까지…‘정년연장’ 요구, 공직 전반 확산”, 2024년 11월 3일자 기사, 조선비즈, “‘정년 연장’ 꺼낸 민주… 與 “경사노워서 다뤄야”“, 2025년 2월 6일자 기사 등 참조

라. 관계 기관 의견

법원행정처는 헌법연구관 정년을 연장할 것인지 여부는, 헌법연구관의 조사·연구 업무의 성격, 경험과 연륜이 풍부한 헌법연구관 활용을 통한 업무의 질적 향상 가능성, 헌법연구관이 안정적으로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 판사, 검사 및 다른 공무원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회에서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함.

헌법재판소는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하면서 헌법재판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신분은 판사·검사와 동일한 특정직국가공무원에 해당하는데, 국공립대학 교수 및 판사의 정년은 65세인 반면,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에 불과하여 대학교수 및 판사로의 주요 이직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헌법연구관의 정년 연장은 조직의 안정적인 운영과 우수한 인재의 영입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의 중요성과 특성, 숙련된 연구 인력 활용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65세로의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함.

문 의 처
02)6788-5058

참고 1

최근 5년간 헌법연구관 정·현원 및 퇴직자 수

(단위: 명)

연도	정원*	전년 대비 정원 증감	현원	퇴직자 수
2020	57(3)	+3	56(3)	3
2021	58(3)	+1	54(3)	3
2022	60(5)	+2	54(5)	1
2023	63(5)	+3	57(5)	6
2024	66(5)	+3	64(5)	3
2025. 3. 1.	68(5)	+2	64(5)	3

* 「헌법재판소 사무기구에 관한 규칙」상 정원

() ; 별도정원으로 국회·대법원 파견 헌법연구관 및 국외연수자(정·현원에 미포함)

자료: 헌법재판소